

화순군 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화순군 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개정안”를 “별지수정안”과 같이 한다.

【 원 안 】

[별 표]

행정공보물 사용료 부과기준표 (후백)

(1회발간분)

구분 규격	화순소식지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기 타	공과금고지서
가로×세로 4.5×1cm이하	1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매당 50원
4.5×5cm이하	30,000원	30,000원	15,000원	15,000원	
9.3×9cm이하	100,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19×9cm이하	250,000원	250,000원	125,000원	125,000원	
19×27cm이하	500,000원	500,000원	250,000원	250,000원	

- 본 기준표는 전·후면을 제외하는 경우이며, 전·후면에 게재할 경우는 30% 가산 적용
- 칼라광고의 경우 위 기준표의 50% 가산 적용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표

(월별기준)

유 형 별	사용료 부과 기준	비 고
버스유개승강장	개소당 60,000원	
간이승강장	개소당 10,000원	
지정벽보판	0.10m'당 4,000원	
휴지통	개소당 10,000원	
벤치	개소당 60,000원	
관광안내도 (시의버스터미널등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되는 종합 안내도)	0.10m'당 20,000원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상기 유형에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적용 부과

【 수정안 】

[별표]

행정공보물 사용료 부과기준표 (흑백)

(1회발간분)

구분 규격	화순소식지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기 타	공과금고지서
가로×세로 4.5×1cm이하	1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매당 50원
4.5×5cm이하	30,000원	30,000원	15,000원	15,000원	
9.3×9cm이하	100,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19×9cm이하	250,000원	250,000원	125,000원	125,000원	
19×27cm이하	500,000원	500,000원	250,000원	250,000원	

○ 본 기준표는 전·후면을 제외하는 경우이며, 전·후면에 게재할 경우는 30% 가산 적용

○ 칼라광고의 경우 위 기준표의 50% 가산 적용

공공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표

(원별기준)

유 형 별	사용료 부과 기준	비 고
버스 유 개 승 강 장	개소당 60,000원	80×40cm이하
승 강 장 표 지 판	개소당 10,000원	50×30cm이하
지 정 벽 보 관	0.10㎡당 4,000원	
휴 지 동	개소당 10,000원	50×30cm이하
벤 치	개소당 60,000원	80×40cm이하
관광안내도 (시외버스터미널등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되는 종합 안내도)	0.10㎡당 20,000원	

○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상기 유형에 유사한 공공시설물로 적용 부과